



한국대학교육협의회
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



푸른등대
한국장학재단

업 무 협 약 서

한국대학교육협의회(이하 ‘대교협’)와 한국장학재단(이하 ‘재단’)은 청년 학업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대학생 등 청년 학업지원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조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.

1. 대학생 등 청년의 학업 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
2.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학생복지 증진에 관한 상호협력
3. 고등교육 등록금, 학자금정책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상호협력
4. 재단 학자금·청년지원정보 등에 관한 상호연계 홍보
5. 대교협 수행사업 등에 관한 상호연계 홍보
6. 그 밖에 청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

제4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이 상호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. 이 조항은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5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간으로 한다. 다만,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된다. 양 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협약의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.

제6조(법적구속력)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4조(비밀유지)를 제외하고 상호간의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.

제7조(기타사항)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6월 11일



한국대학교육협의회
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

회장 이 기 정

이 기 정



푸른동대
한국장학재단

이사장 박 창 달

박 창 달